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회칙

2018. 11. 21.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사무국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회칙

제　　정 2015. 07. 05.
1차 개정 2016. 07. 22.
2차 개정 2017. 03. 22.
3차 개정 2018. 1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35 국립광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과학문화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과학관이 호남권 거점 국립과학관이자 과학 꿈나무를 육성하고 과학문화를 선도하는 명품 과학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1. 과학관 시설 개선 및 전시콘텐츠의 개발 확충 지원
2. 과학교육 운영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과학교육 지원
3. 특별기획전의 개최 등 과학문화 확산 지원
4. 과학관 직원의 능력개발 지원
5. 후원회 활성화를 위한 ‘후원회의 밤’ 개최 등 후원회 운영
6. 기타 과학관 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

제5조(수익사업)

본 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과학관과 협의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적극 지지하고 본 회의 사업에 동참할 뜻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회원은 특별회원, 일반회원[별표 1]으로 구분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및 유지기간)

1.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후원금을 약정 또는 납입했을 때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의 유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 회 운영위원회, 총회 등을 하여 과학관 운영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가 과학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각 우 (이하 "회원 우"라 칭함)을 을 수 있는 권리를 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

1. 후원금의 약정·납입
2. 회칙 및 제 정 수
3. 운영위원회, 총회의 의 사 수

제10조(후원금)

1.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에 대한 후원금의 사 은 [별표 1]과 같다.
2. 회원은 후원금을 금 또는 의 로 납 할 수 있다.

제11조(회원 우의 정지 및 자)

1. 회원이 약정한 후원금을 납 하지 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 에 의하여 해 의무의 이 을 할 때 지 회원 우의 일 또는 전 를 정지시 수 있다.
2. 회원은 후원금의 미납으로 인한 제1호에 자 이 에 또는 제명에 □ □장 □제

3.

위원장한
의무를 대를 성 운영

제15조(원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 한다. 단, 과학관 관장은 직 운영위원이 된다.
3. 원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 회장이 명한다. 단, 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원의 기)

1. 직 운영위원을 제 한 원의 기는 3 이며 할 수 있다.
2. 직 운영위원의 기는 재 기간으로 한다.
3. 원이 기 위된 경우에는 선하며 선된 원의 기는 전 자의 여기간으로 한다. 다 여기간이 3개 미 인 경우이거나 업무 수 에 지장이 는 경우에는 선하지 할 수 있다.

제17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 한다.

제18조(회장의 구성 및 직무)

1.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 회장 1명을 수 회장으로 선 한다.
2. 회장은 회장을 하고, 수 회장은 회장이 재 이거나 유고 시에 업무를 대 하며, 수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업무를 대 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 하여 회의 을 의, 의 한다.

제20조(사의 직무)

1. 사는 본 회의 재산 및 회계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 을 사 한다.
2. 사는 운영위원회에 출 하여 발 할 수 있고, 한 경우에는 회장에 운영위원회의 소 을 구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원이 법인(기업체 함)일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참 하며, 대표자가 참 할 수 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 을 은 대리인이 참 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소)

1. 총회는 특별회원 과반수의 참 (위 장 함)으로 성원이 된다. 개정 2017. 3. 22.
2. 정기총회는 입 출 · 산 및 사업 인을 위해 3 과 12 에 2회 개최한다. 개정 2017. 3. 22.
3. 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 한다.
   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 소 을 의 했을 때
   나. 회장이 하다고 인정하여 총회 소 을 구하 을 때
   다. 운영위원 3분의 1이 이 의제를 명시하여 총회 소 을 구하 을 때
4. 총회의 소 은 회장이 회의 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지 문서로 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 사)

총회의 의 사 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원 선출에 관한 사
3. 사업계획의 인
4. 산 및 산의 인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
6. 기타 한 사

제24조(총회의 의 및 의사록 성)

1. 총회는 출 회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 한다. 단, 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2. 총회의 의사 과 회의 과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성하여 의장이 기명 인한 후 본 회에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 하며, 운영위원 과반수 출 (위 장 함)으로 성원이 된다. 개정 2017. 3. 22.

1. 회장이 하다고 인정하여 소 을 구하 을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 이 소 을 구하 을 때
3. 사가 소 을 구하 을 때

제27조(운영위원회의 의 사)

운영위원회의 의 사 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의
2. 산 및 산의 의
3. 기본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
4. 회원의 우 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
5. 회원의 및 계에 관한 사
6. 후원금 및 후원금의 금 법에 관한 사
7. 기타 총회에서 위 은 사

제28조(운영위원회의 의 과 의사록 성)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 으로 개회하고, 출 운영위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 한다. 다 을 하는 의 사 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위원회 소 이 할 때에는 서 으로 의 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은 의 권을 운영위원회에 참 하는 다 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의 위 을 은 대리인에 위 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의 의사 과 과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성하여 의장이 기명 인한 후 본 회에 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내 을 확인한다.

제6장 기구

제29조(사무국)

1. 본 회의 사무를 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업무를 총 할 사무국장을 며, 사무국장은 본 회의 관 업무를 하는 과학관 본 장이 한다.
3. 사무국에는 직원을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 한다.

가. 사업계획 의 성
나. 산 및 산서 성
다. 사업의
라. 재원의 관리 및
. 각 회의의 및
. 후원금의 수 및 관리
사. 회원 관리
. 운영위원회로 위 은 사
자. 기타 본 회의 운영 및 사업과 관 된 사

제7장 재 정

제30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 한다.

제31조(재원의 운 과 관리)

1. 본 회의 재원은 과학관의 발전을 위해 제4조에 정된 사업 과 본 회의 운영에 한 으로 사 한다.
2. 회원이 도를 지정하여 납 한 금 은 지정 도로 사 해야 한다.
3. 재원의 관리 및 은 회장의 인을 사무국장이 시 한다.

제32조(회계 도)

본 회의 회계 도는 1 1일 12 31일 지로 한다.

제33조(산)

본 회의 입 출 산은 회계 도 개시일 전 지 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을 거 총회에서 인을 야 한다. 개정 2017. 3. 22.

제34조(산)

본 회는 회계 도 경과 후 3개 이내에 산서를 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 을 거 총회의 인을 야 한다.

제35조(회계 사)

사는 회계 사를 1회 이 시하여야 한다.

제8장 칙

제36조(본 회의 해산)

1. 본 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 회원 3분의 2이 의 성으로 의 되며, 과를 과학관에 지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여재산은 총회의 인을 과학관에 기 한다.

제37조(회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 회원 과반수의 성으로 의 되고, 과를 과학관에 지하여야 한다.

제38조(최 의 사업계획 및 산에 관한 특)

본 회의 립이후 최 로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산 은 운영위원회에서 의 하며, 차기 총회에 고한다.

칙 <2015. 7. 5>

이 회칙은 총회의 인을 은 시 한다.

칙 <2016. 7. 22>

이 회칙은 총회의 인을 은 시 한다.

칙 <2017. 3. 22>

이 회칙은 총회의 인을 은 시 한다.

[별표 1]

후원자 및 후원기관 혜택 및 예우

구 분	후원금( )	및 우		유지기간
특별회원	1 원 이 (적)	· 과학관 시설 무 이 · 의 , 등에 후원자 이 명명(1기업 1개소) * 적후원금 최고 에 한해 이 명명 가능 ·		
	5 원 이 (적)	· 과학관 시설 무 이 (5일) · 후원기업 직원가 청 사(1회, 원하는 기업) ·		
	1 원 이 (적)	· 과학관 시설 무 이 (3일) · 후원기관 과학관 이지 이 ·		10
	500 원 이 (적)	· 명 에 기 자 이 및 기관 로고 재 · 후원회의 밤( ) 사 개최 시 청 ·		5
	100 원 이 (적)	· 명 의 전 및 이지에 이 · 후원회의 밤( ) 사 개최 시 청 · 과학관 무 입장(3)		3
일반회원	50 원 이 (적)	· 과학관 주 사 청 · 과학관 무 입장(1)		1
	30 원 이 (적)	· 무 입장권 4인 가 권 10 제	100,000	1
		· 주차 무 10회 제	20,000	
		· 특별기획전 4인 가 권 5 제	200,000	
		소 계	320,000	
	10 원 이 (적)	· 무 입장권 4인 가 권 10 제	100,000	1
		· 주차 무 10회 제	20,000	
		소 계	120,000	

[별지 제1호 서식]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 가입신청서 및 약정서

후원회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핸드폰			
	주 소 (우편물 배송처)				
후원금액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1천만원 ☐ 기타(원)			
후 원 방 법		☐ 계좌이체(일시납) ☐ 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매월 일, 입금액 원) 후원기금 입금 계좌 : 국민은행 766101-01-541955(예금주 : 국립광주과학관)			
후 원 용 도		호남권 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사업			

위와 같이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에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 (인)

국립광주과학관 발전후원회 귀하

☐ 정보동의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부금관리를 위하여 보존되며 기부금영수증 발행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국립광주과학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❹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광주과학관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❸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